

-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6408
------------	------

제출년월일 : 2022.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가. 장애인이용시설인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나.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5조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제공 및 장애인복지증진의 책무가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제공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재활 상담, 의료재활 등 재활서비스, 장애인 직업재활 및 사회교육사업, 지역 사회 사회복지관련 유관기관 연계, 조사연구사업 등에 전문적인 지식,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위탁범위 :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
- 위탁사무
 - 재활상담, 개별재활서비스(언어재활, 심리재활 등), 직업지원사업
 - 장애인의 스포츠 및 문화·여가지원사업
 -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자원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 재가복지사업, 주간보호센터 운영
 - 지역사회와의 연계활성화 및 장애인복지사업 동참 유도
 - 복지관내 각종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 위 치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91길 100(용산동)
- 사업규모 : 부지 959.3㎡, 연면적 3,151.23㎡(지하2층, 지상5층)
- 주요시설 : 운동발달실, 직업지원실, 특수교육실, 주간보호센터 등
- 개 관 : 2002. 8. 31.

마. 민간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민간위탁적격심의)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2년 예산기준)

-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1,267,300천원(시비 100%)
-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비고
합 계	1,267,300		
복지관 운영	1,118,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직원 22명 인건비 및 운영비 - 관장, 사무국장, 팀장, 직원 등 	
주간보호 운영	14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보호시설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 직원 3명, 주간보호 프로그램운영 	
기타 운영비	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포인트 및 상해보험료 	

아. 운영성과 평가 결과(2022년 기준)

- “가” 등급(평점 90.22)

등 급	가	나	다	라	마
평 점	100~90	89~80	79~70	69~60	59이만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 나. 민간위탁 추진 관련 계획 : 붙임 2

[붙임 1]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위탁사무 대상)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른다.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공개모집에 지원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2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종별복지관의 경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을 우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수탁받은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 ③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입금, 수탁자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붙임 2] 추진계획

장애인 복지관·체육관 및 섬들(보호작업장),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추진 계획

장애인 복지관·체육관(4개소) 및 섬들(보호작업장), 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 만료(22.12.31)에 따라 위탁운영 법인을 공모·선정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동시행규칙(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5조, 위탁사무의 기준 및 대상)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위탁운영)
-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위탁운영)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제14조)

II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행정신뢰도 제고
- 민간위탁적격심의위원회를 통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
-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재해예방 조치능력 고려
-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

III 위탁개요

장애인 복지관·체육관 및 섬들(보호작업장)

- 위탁기간 : '23. 1. 1. ~ '27. 12. 31.(5년간)
- 위탁시설 : 달구벌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섬들(보호작업장)
- 위탁사무 :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 위탁사무내역 〉

■ 달구별종합복지관

- 상담사례관리사업, 기능강화지원사업,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사업
- 직업지원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문화지원사업, 사회서비스사업 등
- 복지관부설사업 : 주간보호센터 운영

■ 시각장애인복지관

- 시각장애인 교육재활사업 및 사회심리재활사업
- 시각장애인 직업훈련 및 정보지원, 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 등
- 복지관부설사업 : 주간보호센터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 청각·언어장애인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사업
- 청각·언어장애인 재가복지사업, 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 등
- 복지관부설사업 : 주간보호센터 운영

■ 달구별재활스포츠센터 : 재활스포츠(수영, 체육), 일반스포츠(배드민턴, 탁구, 요가, 헬스)

■ 섬들보호작업장 :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보건 및 안전관리, 생산 및 품질관리

■ 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위탁기간 : '23. 1. 1. ~ '25. 12. 31.(3년간)
- 위탁시설 : 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학대피해장애인 쉼터 포함)
- 위탁사무 : 운영 전반 및 시설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 위탁사무내역 〉

■ 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대구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IV 위탁시설 현황

○ 일반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m ²)	개관일	직원현황
달구벌종합복지관	달서구 달구벌대로 291길 100	·대지 : 3,315.5 ·건축면적 : 9,455.02 (지하2층, 지상5층)	2002. 9. 1.	40명 (관장 1, 사무국장 1, 팀장 8, 담당자 30)
시각장애인복지관		·대지 : 996.2 ·건축면적 : 3,054.4 (지하2층, 지상5층)	2002. 8. 31.	26명 (관장 1, 사무국장 1, 팀장 6, 담당자 18)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대지 : 959.3 ·건축면적 : 3,151.23 (지하2층, 지상5층)	2002. 8. 31.	25명 (관장 1, 사무국장 1, 팀장 6, 담당자 17)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대지 : 11,082 ·건축면적 : 4,633.7 (지하1층, 지상2층)	2000. 11. 9.	20명 (관장 1, 사무국장 1, 팀장 3, 담당자 15)
섬들보호작업장	달서구 달구벌대로 291길 103	·작업장 : 330.07 (5층 중 2,3층 사용)	2010. 1. 26.	5명 (원장 1, 훈련교사 3, 사무원 1)
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동구 서호동 7-17 (비공개시설)	·대지 : 426 ·건축면적 : 269 (지상2층)	2017. 10. 1.	10명 (관장 1, 원장 1, 팀장 2, 담당자 6)

※ 장애인복지관·체육관 및 섬들보호작업장 주요시설 현황 : [붙임 4](#)

○ 예산지원내역(최근3년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달구벌종합복지관	2,054,791	2,192,706	2,296,980
시각장애인복지관	1,239,915	1,310,835	1,384,310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1,147,517	1,212,054	1,267,300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1,224,765	1,241,260	1,285,380
섬들보호작업장	238,386	254,410	293,159
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547,908	589,400	657,412

○ 위탁운영 현황

■ 달구벌종합복지관

- 법인명 :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구협회
- 대표자 : 김창환, 시설장(관장) 서준기
- 위탁기간 : 2018. 1. 1. ~ 2022. 12. 31.(5년)

■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 법인명 : (사단법인)대구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 대표자 : 김재룡, 시설장(관장) 서관수
- 위탁기간 : 2018. 1. 1. ~ 2022. 12. 31.(5년)

■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 법인명 : (사단법인)한국농아인협회 대구협회
- 대표자 : 박노진, 시설장(관장) 김선홍
- 위탁기간 : 2018. 1. 1. ~ 2022. 12. 31.(5년)

■ 대구광역시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전석복지재단
- 대표자 : 정연욱, 시설장(관장) 이용덕
- 위탁기간 : 2018. 1. 1. ~ 2022. 12. 31.(5년)

■ 섬들(보호작업장)

- 법인명 :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구협회
- 대표자 : 김창환, 시설장(관장) 정순태
- 위탁기간 : 2018. 1. 1. ~ 2022. 12. 31.(5년)

■ 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법인명 : (사단법인)대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 대표자 : 이근용, 시설장(관장) 김인아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V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과정	내용	시기
민간위탁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방침(장애인복지관·체육관 및 섬들보호작업장) · 위탁기간 ⇒ '23.1월 ~ '27.12월(5년간) 	8월
시의회 동의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시의회 동의 및 보고(별지1 작성) 	9월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문작성 및 공보게재 의뢰 응모법인 없거나 1개법인 신청시 재공고 실시 	10월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결정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안전관리능력 등 종합적 검토 	11월
수탁법인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법인 공고(6개 기관 각각 수탁법인 공고) 	11월
위수탁협약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협약서(안) 법무담당관실 심사의뢰 대구광역시 법제업무운영규칙(37조) 	11월
위수탁협약체결 및 홈페이지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협약 체결 및 선정결과 시 홈페이지 공개 	12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근거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방법 : 시의회 안건 제출(제295회 정례회)

<동의안 주요내용 >

- 위탁사무명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 수탁자 선정방식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 고 : 2022. 10월 중(15일간)

* 응모법인이 없거나 1개 법인 응모 시 재공고(10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공고안 : 붙임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 팩스 및 우편접수(택배 포함) 불가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제출 이후 서류내용 변경불가
- 응모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이나 분사무소(지부, 지회)를 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으로서,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운영능력을 보유한 법인
- 선정된 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의 무이행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위·수탁협약으로 정함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지표별 심사자료(증빙자료 포함)

■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사(6~9명)
- 지원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중심으로 평가실시
- 심의기준 : 자체심사지표 활용(붙임3)

구 분	심 사 영 역				총 점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안전관리 능력	
배 점	30	40	20	10	100

- 심사위원별 채점 후 최고 득점한 법인 선정 또는 1개법인 적격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세부 심사·평가 계획 별도 수립·추진

- 선정발표 : 시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소정기일 내 협약체결하며, 불응 시 차순위자 선정
 -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VI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승인 : 제295회 정례회(9.15. ~ 9.30.)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접수
 - 2022. 10월 중(15일간)
 - ▶ 공고문안([붙임1](#)), 위탁운영신청서([붙임2](#))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평가심사계획 수립 : 2022. 10월 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2. 11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2. 12월 중
 - 위·수탁협약 체결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시 홈페이지 공개
- 위·수탁 개시 : 2023. 1. 1.
 - ※ 업무추진 일정상 지연될 경우 위탁개시 전까지 사무를 계속하도록 조치